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3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신정훈·오세희·김한규

차지호 · 정일영 · 황명선

문대림ㆍ허 영ㆍ이정문

이해식 • 한민수 • 김문수

채현일 · 안규백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상으로"를 "일상과 경제활동 기반을"로 한다.

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 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	
히 대응·복구하여 <u>일상으로</u>	일상과 경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제활동 기반을
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
	<u>o</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③
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	
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 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 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5의2.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 설>

- 6. (생략)
- 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8. 9. (생략)
- ④ ~ ⑦ (생 략)

 	 _

- 1. ~ 5. (현행과 같음)

----- 소상공인이 피해 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 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6. (현행과 같음)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鹽生産業)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8. 9. (현행과 같음)
 - ④ ~ ⑦ (현행과 같음)